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 | |
|----------|----------|
| 의안 번호 | 관련 8호 |
|----------|----------|

제안년월일 : 2002. 9. 6
제안자 : 김성렬위원외 1인

1. 수정(폐지) 이유

- 제17조(구성 등)1항의 자치위원수를 종전과 같이 수정하고 본 조항의 고문의 수를 조정하여 다수 고문으로 인한 조직 의사결정 과정의 저해요인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고문 대상자인 “시·구의회 의원”이란 표기의 “시의원”은 광역자치단체의 시의원이 아닌 일반 자치단체의 “시의원”을 말함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수정함

2. 주요골자

- (안) 제17조(구성 등)1항의 내용중 “25인 이내”를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종전과 같이 수정하며, “3인 이내”의 고문을 “2인 이내”의 고문으로 수정하고, 또한 “시·구의회 의원”을 “구의회 의원”으로 수정함

수정(안) 대비표

=====

| 현행 | 개정(안) | 수정(안) |
|---|---|---|
| 17조(구성 등) ①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 17조(구성 등) ①.....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 17조(구성 등) ①.....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 · 2인 이내의 고문을 구의회 의원 |